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852호 2022. 4. 1.(금)



선 결	기관의 장

##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703호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704호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6
거창군 조례 제2705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거창군 조례 제2706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거창군 조례 제2707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거창군 조례 제2708호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21
거창군 조례 제2709호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	24
거창군 조례 제2710호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6
거창군 조례 제2711호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1
거창군 조례 제2712호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거창군 조례 제2713호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41
거창군 조례 제2714호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47
거창군 조례 제2715호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52
거창군 조례 제2716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거창군 조례 제2717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64
거창군 조례 제2718호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71
거창군 조례 제2719호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77
거창군 조례 제2720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83
거창군 조례 제2721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거창군 조례 제2722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거창군 조례 제2723호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99  
 거창군 조례 제2724호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2  
 거창군 조례 제2725호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6  
 거창군 조례 제2726호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109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334호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 120  
 거창군 규칙 제1335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5  
 거창군 규칙 제1336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 133  
 거창군 규칙 제1337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146  
 거창군 규칙 제1338호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67  
 거창군 규칙 제1339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78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563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 185  
 거창군 공고 제2022-564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주민 공모(제안)사업 공고 ..... 190

<b>회 람</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03호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 추천을 받을 경우 복수의 추천을 받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2-28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 시행) 제35조제9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1) 독립된 자치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을 원활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위원 위촉 시 복수 추천

2)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리

다. 운영,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4조~제6조)

1) 서면심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 5.~1.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조례안 입법모델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04호

###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 인수와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인수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사무직원 및 인력지원)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거창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인수위원회 업무 수행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를 백서로 만든다.

1. 예산사용 명세
2.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3. 위원 및 직원 등 성명·직위 등

② 백서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2-29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10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수 당선인이 거창군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거창군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인수위원회 및 자문위원 설치근거를 둠(안 제2조)
-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라. 사무직원 및 인력지원을 정함(안 제5조)
- 마. 예산 및 행정 지원, 수당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1. 17.~12.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05호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중복 지원 제한)**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사람 또는 노동자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u>구성한다.</u></p> <p>1.~4. (생략)                      ⑤~⑦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u>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1.~4. (현행과 같음)                      ⑤~⑦ (현행과 같음)</p> <p><u>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u> 군수는 청년 부부에게 <u>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②</u>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u>③</u>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p> <p><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6조의3(중복 지원 제한)</u>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p>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청년 결혼축하금, 청년 디딤돌 통장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 관련조문: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청년 결혼축하금: 매년 100가구, 3년간 600만원 지원
- 2) 청년 디딤돌통장: 매년 100명, 2년간 1인당 480만원 지원
- 3)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50명, 최대 150만원 지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470	910	1,110	1,110	1,110	4,710
군비	결혼축하금	200	400	600	600	600	2,400
	디딤돌통장	240	480	480	480	480	2,160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30	30	30	30	30	150

## 3. 관련 의견

청년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결혼축하금과 디딤돌통장 등을 지원하고자 함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30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 그들이 거창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 1) 결혼축하금
- 2) 금융지원
- 3)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나. 중복 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16조의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 470백만원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 26~2. 1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입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10조)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06호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 중 “2021년”을 각각 “2022년”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중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150원”을 “300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600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u>2022년 6월 30일</u>까지 면제한다.</p> <p>1. 2. (생략)</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u>2024년 12월 31일</u>까지 면제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u>2021년</u>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p>	<p>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u>2022년</u>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p>

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31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및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법령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 생활 안정 및 지방세 납부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감면기한 연장함(안 제2조·제9조의2)

- 1)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2022. 6. 30. ⇒ 2024. 12. 31.
- 2)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2021. 12. 31. ⇒ 2022. 12. 31.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함(안 제10조)

-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 30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 600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 가) 예고기간: 2022. 2. 17.~3.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07호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금 액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1통	200	면제
2)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500	면제
3) 제적등본	1통	500	면제
4) 제적초본	1통	300	면제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500	
	연도 추가	100	
6) 토지(임야)대장	1통	300	
	추가 1장당	100	
7) 건축물대장	1통	300	
8) 자동차등록원부	1통	2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300	
10) 농지원부(관내)	1통	500	
1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500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32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1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비대면 민원발급을 활성화 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군민편의 서비스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안 별표 2)

- 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2종: 200원 ⇒ 면제
- 2)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8종: 500원 ⇒ 면제  
 (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각  
 폐쇄증명 포함)
- 3) 제적등본: 500원 ⇒ 면제
- 4) 제적초본: 300원 ⇒ 면제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민원소통과,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2. 14~3.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이스포츠(전자 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08호

###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32
----------	---------

발의일자	2022. 3. 8.
발 의 자	권순모, 김종두, 최정환,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김향란, 표주숙,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의원

**1. 제안이유**

거창군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이스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다.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마. 경비지원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3. 11.~3.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09호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휠체어택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휠체어택시는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으로 본다.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22-33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2002. 5. 9. 제정하여 휠체어택시를 운영하였으나 2011. 8. 8.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원화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특별교통수단제도를 확대·강화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6조의2
- 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 3.~1. 24.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0호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여성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교육 및 홍보
  4. 지역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4.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5.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6.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거창군 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등의 장 또는 그 기관·시설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안전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회피해야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34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여성폭력기본법」 제정(2019. 12. 25. 시행)과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18. 1. 31.)에 따라 중복·재기재에 불과한 내용을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정함(안 제2조)
-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정함(안 제3조~제10조)
  - 1)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 2)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운영세칙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30조
  - 2) 「여성폭력기본법」
-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70만원 확보(위원수당)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2. 16.~3.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1호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제3조(골목형상점가 신청) 골목형상점가를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도 포함한다)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거창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제6조(은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지번(주소)	면적(m <sup>2</sup> )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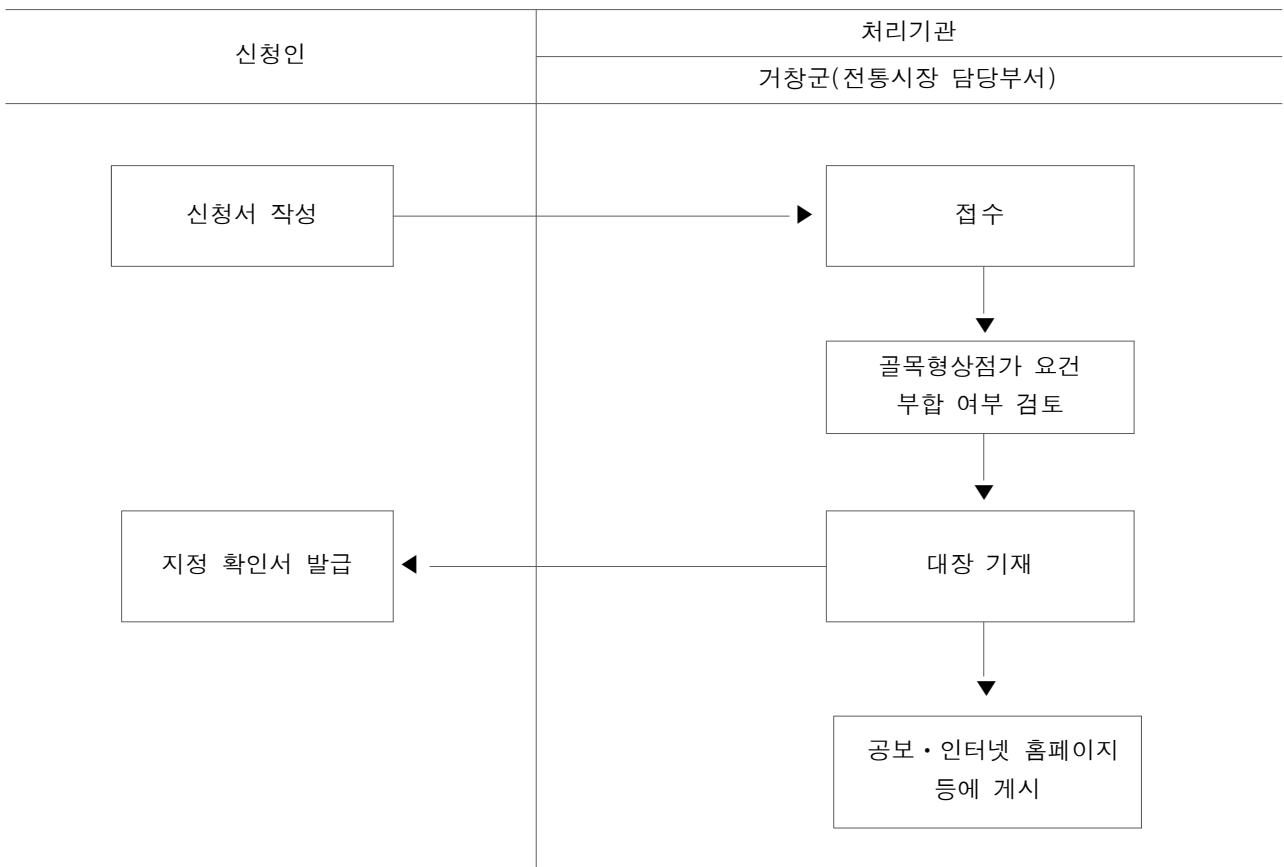
**거창군수**    귀하

붙임 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명이나 날인한 것을 말한다)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확인서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직인

## 거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2-36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1)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수 30개 이상 밀집 구역
- 2)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나.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정함(안 제3조)

- 1)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
-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등

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정함(안 제4조)

라. 골목형상점가 취소를 정함(안 제5조)

마.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권장,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2. 7.~2.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양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2호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조에서 규정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제3조에서 규정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2분의 1”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

1. 교통의 원활한 소통
2.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3.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

제16조제1항 중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목 및 앞면 중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요금의 감면) ① 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                      1.~3. (생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생략)                      ② <u>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u>                      1.~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u>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u>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u>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u>제9조(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u>                      1.~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현행과 같음)                      ② <u>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u>                      1.~8.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익목적에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u>                      1. <u>교통의 원활한 소통</u>                      2. <u>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u>                      3. <u>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u></p> <p><u>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u>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u>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u>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37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시외버스 이용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거창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유료화에 따른 이용률 저조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 증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의된 용어로 정비(안 제9조제1항·제2항)

- 1) 노상주차장 및 직영노외주차장 ⇒ 공영주차장
- 2) “공영주차장”이란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현행 제2조제1호)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안 제9조제3항)

- 1) 공익목적의 사유: 교통의 원활한 소통,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공중의 편의와 안전 도모
- 2) 감면율: 면제 또는 100분의 50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 28~2.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3호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나. 군의회
  - 다. 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책 발굴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  
나.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사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한 번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②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요인

- 1)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시 1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2) 자발적 협약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재정지원

### 나. 관련조문

- 1)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안 제5조제3항)
- 2) 자발적 협약의 체결(안 제6조제2항)

##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필요 예산 10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신종호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2-38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출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그들을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4조)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등

라.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정함(안 제5조)

마. 자발적 협약 체결을 정함(안 제6조·제7조)

바.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을 정함(안 제8조·제9조)

사.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2. 7~2. 28.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4호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  
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거창군민(이하 “군  
민”이라 한다)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  
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할 것
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7조(집행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보급
2. 자원순환 육성·지원
3. 자원순환 인식 확장
4.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무료 지원
5.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자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다회용기 세척시설 구축 1식
- 나. 관련 조문: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안 제8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지원액 \ 연도	2023년도
군비	150백만원

국비·군비 매칭비율=1:1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2023년도 필요 총예산 300백만원 중 군비 150백만원
- 2. 세척전용 건물 신축: 100백만원
  - 가. 설계비: 10백만원
  - 나. 공사비: 90백만원
- 3. 세척시설 설치 및 용기 구입: 50백만원
  - 가. 식기세척기, 살균기 구입비: 12.5백만원
  - 나. 실내공사비: 25백만원
  - 다. 다회용기 구입비: 12.5백만원

작성자 환경과장 신종호

## 거창군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의안 번호	2022-39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경상남도에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요청함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제6조)
- 다.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7조)
- 라.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정함(안 제8조)
- 마.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를 정함(안 제9조)
- 바.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자원순환기본법」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150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2. 7.~2. 2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5호

###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공동주택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거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감사실시)** 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8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군수는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

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 단지명:

연번	성명 (남/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 거창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의안 번호	2022-40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방법을 정함(안 제2조)
- 나.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및 감사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3조)
- 다.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 편성·운영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감사실시 통보,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를 정함(안 제6조~제8조)
- 마. 감사반의 유의사항, 실태조사를 정함(안 제9조·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1. 17.~2.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6호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

하는 거리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p> <p>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이상</p> <p>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이상</p> <p>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p>	<p><b>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b>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p> <p>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p> <p>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한다.</p> <p>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p>

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신 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41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거리 산출기준을 법령위임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4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2. 15.~3.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7호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가공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에 농산물의 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이하 “가공시설”이라 한다)을 갖춰 둔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
3. 가공센터의 가공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
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
5. 가공시설의 이용료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 관련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다만, 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이 경우 농업인등의 비용부담을 최소로 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1. 가공시설 구입가격
2.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3. 제품의 판매가격
4. 가공물량 및 공공요금 등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등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3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가공시설의 이용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가공품이 안전성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수익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법인 등이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가공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비용

나. 관련조문: 제3조(시설 및 운영)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합계
군비	185	185	185	185	185	925

### 3. 관련 의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가. 2022년도 예산 185백만원

나. 시설·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42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정함(안 제4조~제9조)
- 라. 가공시설 이용, 이용료, 이용료 반환, 이용제한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 마.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신설(안 제14조)
- 바. 법령 및 조례 재기개 등 삭제(현행 제3조·제8조·제9조·제16조~제18조)
  - 1) 정의, 실비변상, 관리운영, 위탁기간, 준용, 시행규칙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185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2. 15.~3.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8호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사과(이하 “거창사과”라 한다)와 거창사과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 또는 가공품(이하 “가공상품”이라 한다)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융복합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에 둔다.

③ 융복합센터는 즉석판매조리장, 가공장, 판매장, 체험 및 교육장, 휴식 공간,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제3조(기능) 융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유통·전시·판매·홍보
2.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복합문화사업

3.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유통·전시·판매·홍보
4. 그 밖에 융복합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위탁)**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체험료 등)**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재료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
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군수가 융복합센터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행복농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1. 거창사과 생산·유통·가공·출하 관련기관·생산자단체의 대표자
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촌융복합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나. 관련조문

(1) 제2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등)

(2) 제4조(운영 위탁)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합계
군비	350	825	50	50	50	1,325

국비·도비·군비 매칭비율 = 50:7:43

### 3. 관련 의견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으로 융복합산업화 촉진 및 지역  
경제의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코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융복합센터 건축 및 시설비용: 1,175백만원

2. 운영비용 보조: 매년 50백만원 정도 소요

작성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중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안 번호	2022-43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 이유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거창사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 거창사과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거창사과 융복합센터를 설치하여 거창사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융복합센터 체험료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6조~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61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4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825백만원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2. 15.~3.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19호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제공자의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도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
2.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3.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음

제3조(파손자의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과손자”라 한다)에게 부담하게 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비, 도로복구비 등: 제2조 준용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의 양에 대한 비용: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상수도 요금 산출기준에 따르며, 누수량 및 퇴수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름
3. 급수차의 사용경비: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름
4. 도로결빙 방지비용: 차량경비, 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함
5.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 차량경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식비와 여비에 따름
6. 홍보비: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든 모든 비용을 합함

**제4조(면제)** 군수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부과·징수)** ① 군수는 원인제공자와 과손자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을 먼저 부과·징수한 후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도공사등은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다수의 원인자)** ① 군수는 과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당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

의 성격상 각 다수인의 책임을 분할하여 산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다수인에게 균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7조(과오납금 반환 등)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수도공사등에 든 비용과 다르거나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4,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제2조제3호 관련)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단위사업비”란 순자산에 대한 수도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 = 순자산/시설용량
  - 1) 순자산: 거창군에서 건설한 수도시설(원수,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을 말한다)로서 거창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른 금액
  - 2) 시설용량: 군 자체 정수용량과 광역상수도 광역배분계획량의 합
2. “수돗물사용량”이란 부과대상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계산한 인원에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양을 말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에 실제 들어간 공사비용을 말하며,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고 비용도 그에 따른다.
4. 단위사업비는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기준연도 이후 재적용시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5. 시설용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군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순자산과 시설용량을 재적용한다.



[별표 2]

누수량 및 퇴수량 산출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sqrt{2gh}$  (오리피스공식)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CA\sqrt{2gh} \times 3600$$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256ap^{1/2}$$

$Q1$ = 초당 손실수량( $m^3/sec$ )	$Q2$ = 시간당 손실수량( $m^3/hr$ )
$C$ = 유량계수( $C_a \times C_v$ )	
$C_a$ = 수축계수(0.666적용)	$C_v$ = 유속계수(0.97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면적( $m^2$ ) = 10,000a( $cm^2$ )	$g$ = 중력가속도( $9.8m/sec^2$ )
$h$ = 수두(m) = 10p	$p$ = 수압( $kg/cm^2$ )
(수두 10m는 수압 $1kg/cm^2$ 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출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times L$

$Q$ = 손실수량( $m^3$ )	$A$ = 면적( $m^2$ )	$L$ = 연장 (m)
---------------------	-------------------	--------------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2022-44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수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부담금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공사 등의 원인자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산출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안 별표 1)
  - 2)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안 별표 2)
- 다. 긴급한 재해복구 등 필요시 면제를 정함(안 제4조)
- 라. 부과·징수를 정함(안 제5조)
- 마. 다수의 원인자를 정함(안 제6조)
- 바. 과오납금 반환 등을 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71조,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2. 11.~3.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참고조례안 입법컨설팅 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20호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를 “규칙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중 “조례시행규칙이”를 “규칙”으로 한다.

제20조 조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 61조제3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인·허가 때 부과한다.”를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한다”를 “함”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준공전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설건축물(제20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존치기간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1년 이하: 50퍼센트
2. 1년 초과 3년 이하: 30퍼센트

제31조 조 제목 “(행정위탁)”을 “(행정협약)”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22조·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신고·허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u>」(이하 “<u>조례시행규칙</u>”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u>조례시행규칙</u>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u>조례시행규칙</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① <u>법 제61조제3항</u>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3. (생략)</p> <p>4. 오수발생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u>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u> 등에 <u>공고</u></p> <p>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p>	<p>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규칙</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u>규칙</u>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u>규칙</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u>법 제61조제1항</u>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오수발생량 1m<sup>3</sup>/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u>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u></p> <p>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p>

가(원/세제공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때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생략)

#### <신 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  
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까지 납부하도  
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가(원/세제공미터/일)를 곱하여 산정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나. 징수(납부) 시기는 건축물 준공허  
가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등의 경우  
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  
으로 함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  
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  
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  
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  
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임시사용승인 포함)시 최종금액을 산  
정하여 부과하며, 납부시기는 준공전  
으로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감면)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행정위탁)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가설건축물(제20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존치기간의 구분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1년 이하: 50퍼센트
2. 1년 초과 3년 이하: 30퍼센트

제31조(행정협약) 인접한 군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처리를 위한 해당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1. \text{ m}^3\text{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triangleright \text{(현행)} \quad \alpha = \left(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text{(개정안)} \alpha = (1 + R_1) \times \dots \times (1 + R_n) \quad \triangleright \text{환경부 권고}$$

$\triangleright$  (신설) R(%):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triangleright$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2.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3. 거창군에 2개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거창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45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 권고안을 반영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 공고 및 산정 방법 개선, 부과·징수 시기 명확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 신설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과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방법 개선(안 제20조제1항제4호)

- 1) 현행: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
- 2) 변경: 군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

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제4항)

- 1) 현행: 건축 인·허가 시 부과
- 2) 변경: 건축 인·허가 및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 산정 부과

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근거 신설(안 제20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5)

- 1) 생산자 물가상승률 반영
- 2) 산술평균 ⇒ 기하평균(물가상승에 적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2. 16.~3. 7.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21호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경우”를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 조 제목 “(체육시설 위탁·위임)”을 “(체육시설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전 제1항) 중 “경기단체나 체육단체”를 “단체”로 한다.

별표 2 중 감경률 100분의 80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중 근거법령란에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3조”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6조·제8조”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제9조(사용제한)</b>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li> <li>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li> <li>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li> <li>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li> </ol> <p>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p> <p>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b>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b>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u>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임한다.</p>	<p><b>제9조(사용제한)</b>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li> <li>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li> <li>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li> <li>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li> <li>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li> <li>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b>제23조(체육시설 위탁)</b>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u>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b>&lt;삭 제&gt;</b></p>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2-35
----------	---------

제출연월일	2022. 3. 10.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률을 법령 위임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하여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치나 종교 활동 목적의 사용에 대한 제한 명확화(안 제9조제4호)
- 나. 법령위임범위에서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감경 기준 신설(안 별표2)
  - 1) 근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2) 감경률: 100분의 80
  - 3) 범위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다. 법령 범위에서 위탁 근거 정비(안 제2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2. 3~2.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양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22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보조비 100,000원을”을 “생활보조비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②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u>생활보조비 1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u>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4조(지원대상) ① <u>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서, 지급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한 명의 희생자에 대하여 한 명의 유족에게만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우자</li> <li>2. 자녀</li> <li>3. 부모 또는 조부모</li> <li>4. 형제자매</li> </ol> <p>② <u>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u></p>	<p>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u>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u></p> <p>② <u>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u></p>



[별표]

##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희생자 수	유족 수	지급금액	산출 내용
희생자 1명	1명	1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1명
	2명	2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2명
	3명	3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2명	1명	2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1명
	2명	4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2명
	3명	6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3명	1명	3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1명
	2명	6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2명
	3명	9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4명	1명	4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1명
	2명	8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2명
	3명	1,2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5명	1명	5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1명
	2명	1,0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2명
	3명	1,5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3명

[비고]

- 가. 희생자 수와 유족 수는 예시임
- 나. 유족 1명당 희생자 수에 따라 지원
- 다. 희생자 1명당 매월 지급금액은 100,000원임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2-50	발의일자	2022. 3. 11
		발 의 자	최정환,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김향란,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권순모, 박수자 의원

1. 제안 이유

현행 희생자 1명에 유족 1명에 대해서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던 것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유족에게 희생자 수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상처치유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범위 확대함(안 제4조·별표)

- 1) 현행: 희생자 1명에 유족 1명에게만 지원
- 2) 변경: 모든 유족에게 희생자 수에 따라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7조

나. 예산조치: 2022년 추경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거창사건사업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3. 15.~3. 2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23호

###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특별위원회)</p> <p>①~④ (생략)</p> <p>⑤ <u>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u></p> <p>⑥ <u>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u></p>	<p>제7조(특별위원회)</p> <p>①~④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u>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u></p> <p><u>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u></p>
<p>&lt;신 설&gt;</p>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안 번호	2022-28
----------	---------

제안일자	2022. 3. 8.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전부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과 윤리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필요 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 규정 삭제 (제7조)
-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규칙 제정의 근거 마련(제7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제65조·제66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3. 11.~3.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24호

###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 조 제목을 “회기”에서 “회기 및 소집”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중 의원이 제출 또는 발의

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거창군의회 <u>회기와 그 운영</u> 등에 관한 조례</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u>회기와 그 운영</u>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회기)</b>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거창군의회 <u>소집 및 회기 운영</u> 등에 관한 조례</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u>소집 및 회기 운영</u>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회기 및 소집)</b>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u>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u></p> <p><b>제6조(의안의 제출·발의)</b> 의회에서 <u>의결할 의안 중 의원이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u></p>



#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안 번호	2022-29
----------	---------

제안일자	2022. 3. 8.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으로 임시회 소집 및 의안 발의 정족수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반영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소집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른 제명과 목적조항 개정

나. 조명변경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반영(안 제3조)

1) 조명변경: “회기” ⇒ “회기 및 소집”

2) 소집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다. 의안발의 정족수 반영: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4조, 제7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25호

###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를 제1호·제2호로 각각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p> <p>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lt;삭 제&gt;</p> <p>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p>

#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안 번호	2022-30
----------	---------

제안일자	2022. 3. 8.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전부개정에 따라 군의회 의원의 직무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 중 “직무”에 대한 조항 삭제(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조례 제2726호

###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군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 공보·게시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조례제정·개폐 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 제정  
조례의 [ ] 개정 청구서  
[ ] 폐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b>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b>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의 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의회의 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거창군의회의장</span>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color: red; font-weight: bold;">직인</span> </p>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 청구인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대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의회 의 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안 번호	2022-31
----------	---------

제안일자	2022. 3. 8.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나.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제7조, 제10조)
- 다.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라.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 시
- 다. 합 의: 행정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3. 11.~3.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규칙 제1334호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가액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가. 축의금·조의금	5만원		
	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	10만원		
3. 선물	가.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	현행	개정안	
		10만원 <신 설>	1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가목·나목, 제3호가목·나목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가목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나목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가목의 선물과 같은 호 나목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

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거창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34
----------	---------

제출연월일	2022. 3. 28.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농수산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두 배로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법령 범위에서 변경함(안 별표 1)

- 1) 위임근거: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
- 2) 가액 범위 상한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 3) 내용: 설날·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함: 10만원 ⇒ 20만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제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3. 14.~3.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규칙 제1335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투자기업의 적용범위)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  
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은 군과 투자협약  
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체결할”을  
“체결한”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를  
“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 부지에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

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시설을 포함한다)을 유지(폐쇄·매각·임대 및 축소의 금지를 말한다)하는 경우

제17조제2항 중 “있다.”를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을 각각 제4항·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 제3항) 중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체결일부터 1년”을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4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새로 매입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할 것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lt;신 설&gt;</u>	<u>제2조의2(투자기업의 적용범위)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기업은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u>
<p>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p> <p>① 「<u>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u>」 (이하 “<u>조례</u>”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p> <p>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u>체결할</u> 기업일 것</p> <p>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p> <p>3.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이 10명 이상일 것</p> <p>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p> <p>5. 여성대표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가</p>	<p>제3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p> <p>① <u>조례</u> 제12조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p> <p>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u>체결한</u> 기업일 것</p> <p>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p> <p>3.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이 10명 이상일 것</p> <p>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p> <p>5. 여성대표기업, 여성고용우수기업, 가</p>

죽친화인증기업,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시 우대할 수 있음

③ (생략)

제16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기업이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관내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2.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 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 설>

3.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죽친화인증기업,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시 우대할 수 있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투자기업이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관내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관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2. 새로 매입한 토지 또는 기존 공장 부지에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3. 기존사업장(시설을 포함한다)을 유지(폐쇄·매각·임대 및 축소의 금지를 말한다)하는 경우

4.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4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1. 새로 매입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할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외 관내 기업이 「거창군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준하여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것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 외 관내 기업이 「거창군 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준하여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6]

##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 1. 일반인(개인·단체·기관·기업 포함)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0.001 \pm$ 투자금액 $\times$ <u>0.0015</u>	1,000만원 <u>1,500만원</u>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u>1,500만원</u> + (투자금액 - 100억원) $\times$ <u>0.0005</u>	2,600만원 <u>3,500만원</u>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2,500만원 <u>3,500만원</u> + (투자금액 - 500억원) $\times$ <u>0.0004</u>	4,000만원 <u>5,500만원</u>
1,000억원 초과	5,000만원 <u>5,500만원</u> + (투자금액 - 1,000억원) $\times$ <u>0.0003</u>	2억원

### 2. 공무원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0.0002$ 투자금액 $\times$ <u>0.0004</u>	200만원 <u>400만원</u>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0만원 <u>400만원</u> + (투자금액 - 100억원) $\times$ <u>0.00005</u>	350만원 <u>600만원</u>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50만원 <u>600만원</u> + (투자금액 - 500억원) $\times$ <u>0.00004</u>	500만원 <u>800만원</u>
1,000억원 초과	500만원 <u>800만원</u> + (투자금액 - 1,000억원) $\times$ <u>0.00003</u>	2,000만원 <u>3,000만원</u>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35
----------	---------

제출일자	2022. 3. 28.
제 출 자	미래전략과장

## 1. 제안이유

투자기업의 적용범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내기업 지원 범위,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투자기업 적용범위 신설(안 제2조의2)

1)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나. 개별입주 기업 지원범위 확대(안 제16조)

1) 도내 사업장의 관내 이전 시 보조금 지원 제한 준용 규정 삭제

다. 관내기업 지원기준 확대 등(안 제17조)

1) 기존 사업장에 시설 추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지원

2) 기존 지원기준 + 공장 신설,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및 신규채용 상시 고용 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3) 신청기한 명확화

(가) 현행: 토지, 건물 등을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투자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

(나) 변경: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라.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조정(안 별표 6)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나. 예산 조치: 2022년도 예산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 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2. 25~3.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규칙 제1336호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거창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원 결정 및 통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그 밖의 지원분야의 청년 주택 전세·구입 자금 이자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제2조 관련)

사 업 명	세 부 지 원 기 준												
<p>1. 청년 결혼 축하금</p>	<p>가. 지원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부 모두 청년일 것</li> <li>2)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li> <li>3)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li> <li>4) 3회 신청 시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li> <li>5) 생애 한 번만 지원</li> </ol> <p>나. 신청시기 및 지급금액</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408 1155 1401 1391"> <thead> <tr> <th>구 분</th> <th>최초</th> <th>2회</th> <th>3회</th> </tr> </thead> <tbody> <tr> <td>신청시기</td> <td>혼인신고 후 1년 이내</td> <td>최초 신청 다음 연도</td> <td>2회 신청 다음 연도</td> </tr> <tr> <td>지급금액</td> <td>2,000</td> <td>2,000</td> <td>2,000</td> </tr> </tbody> </table> <p>다. 지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읍·면: 혼인 신고시 결혼 축하금 시책 안내 및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7일까지 인구교육과 송부</li> <li>2) 인구교육과: 신청서 취합 확인 후 다음 달 지급</li> </ol>	구 분	최초	2회	3회	신청시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최초 신청 다음 연도	2회 신청 다음 연도	지급금액	2,000	2,000	2,000
구 분	최초	2회	3회										
신청시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최초 신청 다음 연도	2회 신청 다음 연도										
지급금액	2,000	2,000	2,000										
<p>2. 청년 디딤돌통장</p>	<p>가. 지원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군에 주소를 둔 청년일 것</li> <li>2)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노동자일 것</li> </ol> <p>(가) 피고용주 또는 고용주(소상공인에 준한 자를 말한다)</p>												

사 업 명	세 부 지원 기준
	<p>(나) 농업·축산업·임업 종사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청년에 한정한다)</p> <p>3)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일 것</p> <p>4) 지급 시 군에 주소를 유지할 것</p> <p>나. 지원 방법 및 금액</p> <p>1) 생애 한 번만, 최대 4,800천원 지원</p> <p>2) 매월 적립 후 2년 만기 시 지급</p> <p>다. 지원 대상 선정</p> <p>1) 선정인원: 매년 100명</p> <p>2) 우선순위: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신청자 순</p> <p>3) 동점자 순위 결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 적용</p> <p>(가) 가구원 수 많은 사람</p> <p>(나) 신청자의 연령이 적은 사람</p> <p>라. 지원 제외 대상</p> <p>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p> <p>2)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p> <p>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p> <p>4)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지요원 등), 선정된 후 군 복무를 위하여 입대하는 경우 중도해지</p> <p>5)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p> <p>6) 그 밖에 사치·향락·도박·사행 종사자 및 운영자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p>



사 업 명	세 부 지원 기준
<p>3.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p>	<p>가. 지원요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로 다음의 대상별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일 것</li> <li>2)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일 것</li> <li>3)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일 것</li> </ol> <p>나. 지원금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 금액: 주택 전세 자금의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하되, 대출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다만, 다음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li> <li>(나)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li> <li>(다) 전입세대: 최대 50만원</li> </ol> </li> <li>2) 지원기간: 연 한 번, 최대 세 번 지원</li> </ol>

[별지 제1호서식]

## 거창군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연락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입신고일	혼인신고일
본인		□남 □여			
배우자		□남 □여			상동
지급 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p>「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인)</p>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p>1.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관: 거창군</p> <p>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거창군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p> <p>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금 계좌정보 등</p> <p>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거창군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p> <p>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거부의 권리</p> <p style="text-align: center;">-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거창군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거창군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하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b>거창군수 귀하</b>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가입신청서

접수번호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 기본정보			
<b>인적 사항</b>	신청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최종 학력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졸업 <input type="checkbox"/> 대학교(재학,휴학) <input type="checkbox"/> 대학교졸업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이상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결혼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거창군 거주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 거창군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b>가구 및 소득</b>	가구 특성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input type="checkbox"/>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input type="checkbox"/> 그 외 일반 가구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1인 <input type="checkbox"/> 2인 <input type="checkbox"/> 3인 <input type="checkbox"/> 4인 <input type="checkbox"/> 5인 <input type="checkbox"/> 6인 이상 (가구원 수:    ) ※ (미혼-본인 및 부모(주민등록등본상), 기혼-본인 및 배우자, 자녀포함)	
<b>근로 사항</b>	근로유형	<input type="checkbox"/> 임금 노동자(상용직, 임시직)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축산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임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유형(            ) ※ (공고일 기준 최근 60일)	
	근무처 (사업장)명		근무처 연락처
	근무처 주소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거창군 청년 디딤돌통장」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4. 신청조사와 별도로 가입기간 중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합 시 중도해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읍면(접수)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자택: 핸드폰:	
거창군 거주기간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신혼부부 해당)				주택소유여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출산일 (출산가정 해당)						
	전입신고일 (전입세대 해당)						
임차 주택현황	소재지				소유자		
	임차 금액(원)				임차면적 (제곱미터)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성 명 (인)                 </div>							
위와 같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거창군수 귀하							

<p>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p>	<p>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목적: 청년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혼인관계증명서의 정보 확인</p> <p>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신청인: 성명, 주소(전입일자 포함), 자녀 수  나. 신청인: 혼인신고일,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지방세 내역</p> <p>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p> <p>신청인은 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창군이 청년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칸에 √표시)</p> <p>※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p>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p>1. 서약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전세자금인 경우)  3.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 날인)  - 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1부  5. 신청인의 통장</p>			<p>1.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요청 (부부 각 1부)</p>		
<p>읍·면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p>	<p>확인자: 소속</p>	<p>년 월 일</p>	<p>직급 일</p>	<p>성명 (서명)</p>	<p>읍·면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2-10
----------	---------

제출연월일	2022. 3. 4.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 1. 제안이유

조례에 청년 생활안정 지원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원기준, 절차, 서식 등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을 정함(안 제2조, 별표)

#### 1) 규모

- 가) 청년 결혼축하금: 최대 600만원, 생애 한 번만
- 나) 청년 디딤돌통장: 최대 480만원, 생애 한 번만
- 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50만원, 최대 세 번

#### 2) 요건

가) 청년 결혼축하금

- (1) 부부 모두 청년일 것
- (2) 혼인 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나) 청년 디딤돌통장

- (1)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 청년 노동자 중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
- (2) 매월 적립금 지원 후 2년 만기 지급

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대상별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 (1)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2)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인 출산가정
- (3)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전입세대

나. 지원 신청 및 결정·통보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9조

나. 예산조치: 2022년 본예산 470백만원 반영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 26~2. 1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규칙 제1337호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① 거창푸드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를 운영하고 거창푸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각 위원회 구성 등) ①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거창군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와 거창군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수탁기관

나. 농업인단체

다. 생산자단체

라. 소비자단체

마. 가공·유통분야 단체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컨설팅기관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각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각 위원회 운영 등)** ① 각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거창푸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그 밖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거창푸드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거창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대상이 되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농산물: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 소재 농업관련 단체가 직접 생산한 것일 것
2. 농산물가공품: 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부재료일 것. 다만,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재료·부재료는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으나 농산물가공품의 특성상 함유비율, 가공방법 등이 특별한 경우 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인증기준)** 조례 제12조 및 제16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 농산물일 것. 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일 것

- 가.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 다.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산물가공품일 것
- 가. 인증을 받은 거창푸드(이하 “인증식품”이라 한다)가 50퍼센트 이상 함유된 원재료·부재료를 사용할 것
  - 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할 것

**제9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인증 관련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인증기준 검사 및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 3. 제8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4.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증받은 경우

**제10조(인증심사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인증 건수 증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인증심사원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의 시료는 신청인 참석하에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④ 농산물가공품은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인증 심의)** ① 군수는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심사 후 거창군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인증의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4조(인증의 표시 등)** ① 인증표시 및 인증번호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상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인증번호, 품목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인증표시는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브랜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은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6조(인증 표시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인증식품이 제8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표시 정지 또는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표시 정지 1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표시 정지 3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 정지 또는 인증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7조(인증신청 제한)** 조례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1. 인증신청 시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인정한 농약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8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서 사후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증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인증식품의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인증식품에 대한 인증 상황 등을 공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거창푸드 및 제휴푸드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이 별표 3에 따른 사용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
  3. 인증식품의 취급과 그 밖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표준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방법에의 적합 여부 등
- ③ 군수는 인증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식품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검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① 인증 및 연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및 연장 신청을 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인증 교육을 한 번 이상 받아야 한다.

1. 인증기준
2. 인증심사 기준
3. 인증식품 사후관리 등

② 군은 교육참여자에게 교육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1조(조사 참여)**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참여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푸드 인증 대상품목(제7조 관련)

구분	품목	분류번호
곡류	쌀, 보리, 밀, 메밀, 호밀, 기장, 귀리, 율무, 수수, 조, 옥수수 등	01
서류	감자, 고구마, 토란, 곤약(구약), 야콘 등	02
두류	대두, 서리태, 강낭콩, 작두콩, 팥, 녹두, 완두, 동부 등	03
과실류	사과, 배, 밤, 감, 감귤, 복숭아, 매실, 앵두, 살구, 자두, 모과, 포도, 석류, 유자, 참다래, 호두, 은행, 대추, 머루, 오미자, 무화과, 천혜향, 레몬, 체리, 블루베리 등	04
채소류	배추, 무, 고추, 오이, 호박, 대파, 쪽파,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멜론, 양파, 마늘, 마늘중, 양배추, 열무, 당근, 시금치, 들깻잎, 부추, 상추, 양상추, 생강, 우엉, 연근, 미나리, 고구마순, 썩갓, 케일, 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갓, 콩나물, 달래, 냉이, 비트, 곤드레, 고사리, 파슬리, 새싹채소, 참나물, 청경채, 취나물, 숙주나물, 그린비타민, 비름, 두릅순, 뽕잎, 셀러리, 아욱, 파프리카, 치커리, 근대, 고수, 쌈채, 공심채 등	05
유지작물류	참깨, 들깨, 검정깨, 땅콩, 잣, 해바라기씨 등	06
특용·약용작물류	산양삼, 구기자, 당귀, 맥문동,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가피, 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 국화, 감초, 배초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홍화, 등굴레,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썩, 애엽, 단삼, 익모초, 소엽, 당삼, 현삼, 헛개나무, 꾸지뽕, 계피, 두릅, 썩부쟁이, 복령 등	07
버섯류	느타리, 팽이, 영지,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새송이, 표고, 목이 등	08
축산물류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양봉산물(벌꿀, 화분 등), 식용란(계란 등) 등	09
가공식품류	반찬류, 장류, 찜류, 떡류, 한과류, 드레싱류, 유지류, 음료류, 옥수수, 죽류, 두부류, 제과, 제빵, 스낵류, 과일칩, 분말류, 다류, 환류, 유제품류, 축산물가공품 등	10

\* 품목군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함

[별표 2] (제11조 및 제12조 관련)

### 현 장 심 사 표 (농산물)

신청인 (대표자)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재배 작목명	소재지 지번	재배면적(m <sup>2</sup> )	생산계획량(kg)

거창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_\_\_\_\_)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소속: \_\_\_\_\_)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소속: \_\_\_\_\_)    성명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 인 증 심 사 표 (농산물)

### 1. 생산자의 책무 준수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거창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거창푸드를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거창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2. 재배방법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시기는 생산물의 생육기간의 절반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나.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3. 생산물의 품질 관리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거창푸드로 인증받은 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나. 잔류농약 검출한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로 허용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다. 거창푸드로 인증받은 농산물 출하 시 거창푸드 인증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일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 선전을 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인 증 심 사 표 (축산물)

### 1. 생산자의 책무 준수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거창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가축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창푸드를 생산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거창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2. 사육시설 입지 및 기자재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사육시설이 소재한 주변의 환경은 가축을 사육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주변에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나. 사육시설의 기자재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하고 있으며, 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3. 가축방역 및 생산시설 관리실태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경우가 없거나, 노출된 경우 이를 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나.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관련내용을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다. 생산(사육)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분뇨의 처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현 장 심 사 표 (농산물가공품)

신청인 (대표자)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가공식품명	원재료명 [생산지, 함유량(퍼센트)]	부재료명 [생산지, 함유량(퍼센트)]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번호	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거창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 인 증 심 사 표 (농산물가공품)

### 1. 생산자의 책무 준수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거창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거창푸드로 인증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부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 여부 2) 거창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2. 생산시설 입지 및 작업 환경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가공제조시설이 소재한 주변의 환경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없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나. 작업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며, 매일 물청소를 하되 청소 후 물기가 없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및 방역을 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3. 원료, 자재 및 제품 보관 관리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제품은 별도 구역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제품의 성질에 따라 냉장,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출고 시 선입선출이 이루어 져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나. 식품용수는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이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4. 생산자 및 작업자의 위생관리

심사기준	적합여부	부적합 사유
가. 생산자 및 작업자는 위생복을 착용하고, 소독을 거쳐 작업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거창푸드 인증표시 및 인증번호부여 방법

### 1. 모양 및 색상



### 2. 도안 설명

통합브랜드를 활용한 상표 사용으로 거창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기존 거창농산물 브랜드와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 3. 표시 방법

- 가.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상표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나, 상표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 나. 상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 다.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상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할 수 있다.

### 4. 인증번호 부여 방법

- 가. 표기방법
  - 1) 거창푸드 도안 아래 인증번호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인증번호는 인증연도 - 품목 분류번호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 2) 품목별 분류번호는 별표 1의 분류번호에 따른다.
  - 3) 일련번호는 인증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나. 예시

1) 2022년도에 과실품목 “사과”에 처음으로 인증을 부여할 경우  
:22 - 04 - 0001

2) 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미 부여받은 부여 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인증연도를 변경한다.

- 당초 인증: 22 - 04 - 0001

- 기간 연장: 23 - 04 - 0001

[별지 제1호서식]

## 거창푸드 인증(연장) 신청서

<b>신 청 자</b>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장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주소									전화번호 (FAX)							
<b>생 산 계 획</b>	<b>농산물(축산물)</b>																
	품목(품종)	소재지 (읍·면·동)	지번	재배면적 (제곱미터) (사육두수)	필지면적 (제곱미터) (사육면적)	연간 생산량 (킬로그램)							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출하시기 (해당란에 ○표 하시오)																
	품목(품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b>가공식품</b>																
	품명	원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			부재료명[생산지, 함유량(퍼센트)]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인증번호			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접수일								현장심사통보일									
심의회제출일								결과통보일									
인증유효기간	~							인증번호									
<p>거창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 하																	
<b>첨 부 서 류</b>	<b>농산물(축산물)</b>							<b>가 공 품</b>									
	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1.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필지별 실제 경작증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농산물필수)							2. 원재료·부재료 거창푸드 인증서 사본 1부(필수)									
	4.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농산물해당자)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3.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인증 사본 1부(축산물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5. 그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앞쪽)

제 호	사 진 (35밀리미터× 45밀리미터)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직인)	

49밀리미터 × 75밀리미터(인쇄용지(특급)190그램/제곱미터)

(뒷쪽)

<p style="text-align: center;"><b>주 의 사 항</b></p> <p>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2. 위 사람은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현장심사 및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고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보완·시정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

거창푸드 인증서				
인 증 변 호				
사 용 권 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사 용 내 용	대상품목			
	재배필지주소			
	인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거창군 거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푸드 인증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 font-size: 1.2em;">거   창   군   수   (인)</p>				

[별지 제4호서식]

### 거창푸드 인증 관리대장

일련 번호	인증번호	인증자			내 용		비 고
		성 명 (성별)	연락처	주 소	대상품목	승인일자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36
----------	---------

제출연월일	2022. 3. 28.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 1. 제안이유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거창푸드 인증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함

## 2. 주요내용

- 가.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을 정함(안 제2조)
- 나.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위원회 및 거창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정함(안 제3조~제6조)
- 다. 인증대상 품목 및 요건, 인증기준, 인증신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별표 1)
- 라. 인증심사원, 인증 심사기준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별표 2)
- 마. 현장심사, 인증심의를 정함(안 제12조·제13조, 별표 2)
- 바. 인증의 표시, 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함(안 제14조·제15조, 별표 3)
- 사. 인증 표시정지 및 취소, 인증신청 제한을 정함(안 제16조·제17조)
- 아. 인증 및 인증식품의 사후관리 등을 정함(안 제18조·제19조)
- 자. 교육, 조사참여를 정함(안 제20조·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 나. 예산조치: 2022년 예산 387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1. 10.~11. 3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규칙 제1338호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거창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출 시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및 수도시설의 유지·보수(이하 “수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작업시간은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작업이 완료된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한다.

제3조(현장조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면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
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관리
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

#### 4. 재산과 인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및 이로 인해 다른 시설물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시설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에게 파손원인자 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판단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수도공사등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 급수설비
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도시설

**제6조(수도공사등 신청)** ①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원인제공자와 파손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해야 한다.

②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공사등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등의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수도공사등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르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조례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로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③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해야 한다.

제8조(과오납금 반환 등)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  
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7조제1항 관련)

거창군 ○○읍(면) ○○리 ○○번지의 ○○필지상의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거창군수와 원인제공자인 ○○사업 ○○○와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신설·증설에 드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의 원칙)** 상수도 시설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설·증설에 드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같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같은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 추가사업비
2. 단위사업비 부담금(단위사업비 × 수돗물사용량)

단위사업비 부담금(천원)	단위사업비(천원/톤)	수돗물사용량(톤/일)	비고

3. 추가사업비

추가사업비(천원)	사업위치	사업량	비고(관중 등)

4.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가 군수에게 공사계획 및 시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원인제공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5. 추가사업의 범위는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공사비, 토지매입비, 설계비, 부대비 등이며, 급수전 인입공사는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별도로 시행한다.

② 원인제공자는 원인자부담금을 군수에게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분	납부금액	비율(퍼센트)	납부시기	납부기한
합계				
1차			협약일부터 ○○개월 이내 ( 年 월 일)	고지일부터 30일
2차			협약일부터 ○○개월 이내 ( 年 월 일)	고지일부터 30일
3차			협약일부터 ○○개월 이내 ( 年 월 일)	고지일부터 30일
4차			협약일부터 ○○개월 이내 ( 年 월 일) (다만, 용수공급개시이전)	고지일부터 30일

**제5조(부담금의 정산)** 원인제공자가 군수에게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면적 확대 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사항 외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 처리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원인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한 상수도시설은 준공과 함께 군수의 자산으로 귀속하며,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시기)** 원인제공자가 군수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완료하고 원인제공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사업 지구 내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점검이 완료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거창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이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군수와 원인제공자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한 경우
4. 원인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

의 해지 또는 해제 시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원인제공자 및 승계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② 군수의 부과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원인제공자가 재산정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경우, 군수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그 밖에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이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군수와 원인제공자가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 . . .

거창군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성 명: 거 창 군 수 (인)

원인제공자 주 소:  
성 명:

[별지 제2호서식]

파손원인자 확인서(제7조제2항 관련)

1. 공 사 명:
2. 시 행 처:
3. 시공회사:
4. 회 사 명:
5. 주 소:
6. 대 표 자: (남/여)
7. 전 화:

위 회사는 위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  
을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  
케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누수 발생 시간:  
단수및통수시간:  
누 수 구 경:  
파 손 상 태:  
누 수 원 인:

년 월 일

확인자 현장소장:  
전화번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제7조제3항 관련)

연번	신청위치	원 인 자			납 부 현 황			비고
		주 소	성 명	(남/여)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일	

[별지 제4호서식]

파손자 관리대장(제7조제3항 관련)

연번	파손현황				파손자 현황			원인자부담금				처분사항			비고
	일시	위치	구경	누수량	주소	성명	(남/여)	계	공사비	누수 손료	그 밖에	납기	징수	독촉	



#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안 번호	2022-24
----------	---------

제출연월일	2022. 3. 4.
제 출 자	수도사업소장

## 1. 제안이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면제 기준, 부과·징수 절차·서식 등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인 작업시간을 정함(안 제2조)
- 나. 현장조치 및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부담금의 면제를 정함(안 제5조)
- 라. 수도공사등 신청을 정함(안 제6조)
- 마. 부담금의 부과·징수, 과오납금 반환 등, 이의신청, 준용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2. 11.~3.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창군수 구인모

---

2022년 4월 1일

거창군 규칙 제1339호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람 수입료 정산)**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류

-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 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다.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2. 사업계획서
  -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제4항”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제3항”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5조”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b> 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p> <p><b>제3조(관람권의 종류)</b>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청소년·어린이관람권 4. 단체관람권 5. 초대권</p> <p><b>제4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b>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관람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사용자가 매표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관람권은 매수</p>	<p>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b> 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p> <p><b>&lt;삭 제&gt;</b></p> <p><b>제4조(관람 수입료 정산)</b>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종료 후 군수가 지정한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수입 정산내역서에 따라 정산한다.</p>

등을 확인한 후 폐기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생략)**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단체 및 개인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업계획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명단과 재산현황(증명서류 첨부) 각 1부
6.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류
  -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 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다.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u>신 청 인</u>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탁기간		당초	
		연장	
연장사유			
			수수료 없음
<p>「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기관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수 귀하</p>			
첨 부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li> <li>2.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신분증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li> <li>3. 사업계획서 1부</li> <li>4.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li> <li>5.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li> </ul>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p>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22-27
----------	---------

제출연월일	2022. 3. 4.
제 출 자	체육시설사업소장

## 1. 제안 이유

행정기관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제출요구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제출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등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명, 제3조·제4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나. 관리 위탁 신청(연장) 시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첨부 삭제(안 제8조, 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

1)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계획(2018~)
-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3) 「지방자치법」 제13조·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2. 3.~2.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양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거창군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 거창군수

#### 1. 추가 모집인원 : 1명

(단위: 명)

구분	모집인원	선발기준
청소년	1명	- 대상 : 17세 이상 ~ 24세 이하 ▶ 1999. 1. 1. ~ 2006. 12. 31. 출생자 ※17세 미만이라도 고등학생인 경우 가능

#### 2.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17세 이상 24세 이하의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를 받은 사람

##### ※ 응모자격의 제한

- 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② 거창군 위원회에 4개 이상 위촉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 3. 제출서류 <거창군 홈페이지-군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1부
- 자격요건 등 검증 동의서 1부
-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학생증, 사회적약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2. 4. 1. ~ 4. 29.(29일간)
- 접수처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5.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방문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2층) 예산담당
- 우 편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이 메 일 : [curianm07@korea.kr](mailto:curianm07@korea.kr)
- 팩 스 : 055-940-3029

☞ 방문 접수의 경우 근무시간 내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근무시간: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는 마감시한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접수여부 유선(055-940-3053) 확인

### 6. 선정기준

- 응모 신청자가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 결격사유가 없을 시 그대로 선정함
- 응모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 추첨하여 선발함

### 7.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적합여부 검토, 대상 구분
-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으로 선정(당일 본인 추첨, 불참 시 대리 추첨)

### 8. 선정자 발표 : 2022. 6월 중(예정) / 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9. 임기 : 2년 ※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10. 주민참여예산위원 역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견 제시, 제도 운영결과 평가 등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분과위원회 활동 등)
-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그 밖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1. 기타 참고사항

-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회의 참석 시 **회의 수당 지급**(무보수 명예직)
- 선정된 위원은 향후 거창군 예산학교 과정을 필히 수료하여야 함
- 공개 추천 시 추천자는 참석자 중 무작위 선정하여 공개 추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문의(☎ 055-940-3053)

붙임 1

[접수번호 : (접수일시 : 2022. . . : )]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한자)	E-mail		
주 자 택 소	택	우편번호( )		
	근무처 (학교)	우편번호( )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직 업	※ 학생이 아닌 경우 현 근무지, 직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신청동기	※ 근무경력, 활동내역 등 주요내용으로 요약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활동사항은 별도작성 가능)			
사회적 약자	▶ <b>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v표시해 주세요</b>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수급자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	기획보건사업소	행정복지	경제산업	농업
※ 참여 희망분과 해당 칸에 1지망, 2지망 표기(희망을 우선하되, 임의 배정될 수 있음)				
거창군 내 위원회 소속 확인	소속 위원회명	거창군 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았음을 서약하며,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사실이 확인 될 시 위촉을 취소함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개인정보 취급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조례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직장 소재지가 거창군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위 본인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22. . .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 (서명)

신청인 :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

## 자격요건 등 검증 동의서

본인은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자로서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위원 자격요건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 등을 위한 확인서 발급(조회)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개인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비 동의시 위원신청 불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수집·이용목적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수집·활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업, 직위, 연락처(주택, 직장, 휴대전화, e-mail), 사회적 약자 여부, 참여희망분과,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신청동기 및 다짐 등
- 보유·이용기간 : 위원 응모신청일로부터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2022. . .

(미성년자)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 .

거창군수 귀하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주민 공모(제안)사업 공고

거창군은 예산편성 등 예산 전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 사업제안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일

### 거창군수

1. 공 모 명 :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2. 공모규모 : 총16억 원

구 분	사업내용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5억 원)	- 1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천만 원 이내 -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신청자격 : 전 군민(공무원 포함)
청소년·청년주도형 참여사업 (5억 원)	- 1억 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천만 원 이내 -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군 자체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업 - 신청자격 : 전 군민(공무원 포함)
지역주도형 자치사업 (6억 원)	- 5천만 원 이내(읍·면별 실링* : 5천만 원) *실링액은 경남도 주민자치형 사업 군비 매칭액과 별도 금액임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 사업제안 : (11개 면)주민자치회, (거창읍)지역회의

3. 대상사업 : 거창군내 시행가능사업(타 기관사무, 국가사무 제외)

#### 4. 제외사업

- ✓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
- ✓ 국고보조사업,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 경비
- ✓ 특정단체·개인의 지원 또는 이익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
-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
- ✓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 낭비적 성격의 행사·축제성 사업 등
- ✓ 민간이전 경비(보조금)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

5. 공모기간 : 2022. 4. 1. ~ 6. 24. (85일간)

6. 신청자격 : 거창군민, 단체

7. 참여방법 : 사업제안 신청서 제출

- 거창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군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

- 우 편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 방 문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예산담당), 읍·면사무소

※ ‘지역주도형 자치사업’은 읍·면 주민자치회 및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발굴

8. 문 의 처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3)